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p style="margin: 0;">2020. 11. 2.</p>		<h2 style="margin: 0;">양형위원회</h2>
	<p>담당부서</p>	<p>운영지원단</p>
	<p>담당자</p>	<p>운영지원단장 송영복 판사 (☎ 02-3480-1924)</p>

대법원 양형위원회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 11. 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0. 11. 2. 14:00 ~ 17:2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 사회 :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발표 : 손철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지정토론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윤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 김현아(김현아 법률사무소)
- 이경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개요

2020. 9. 15. 배포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보도자료(첨부 자료) 참조

③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 통상의 성범죄와는 구별되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명칭을 붙이고 별도의 양형기준 편제를 둔 점은 바람직하다는 의견(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 디지털 양형기준안은 ‘선도적’ 기준을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양형실무뿐만 아니라 법관 대상 조사, 국민참여형 모의 양형컨퍼런스, 양형인식 연구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 권고 형량 범위의 최하한인 감경영역 하한은 양형법관에게 하향이탈의 소명부담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두거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둔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이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 디지털 성범죄에 행위 태양에 따른 더 세부적인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윤정 교수)
- ☞ 영리 목적 제작 등 범죄의 형량 상한을 더 상향하자는 의견(이윤정 교수)
- ☞ 양형인자 중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윤정 교수)

▣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반포 행위에 대한 형량 범위가 낮게 설정되어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승희 대표)
- ☞ 특별히 의미가 있어 성범죄 양형기준에 준용될 필요가 있는 양형인자들도 많지만, ‘촬영물/합성·편집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농아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의 각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승희 대표)

- ☞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에서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등 항목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승희 대표)
-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에는 종전 양형실무인 실형과 집행유예 비율 등 자료 보완이 필요하고,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범죄와 관련해서는 작성 범죄인 소유형 1과 반포 범죄인 소유형 2의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신진희 변호사)
-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양형인자로 포함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신진희 변호사)
- ☞ 특별양형인자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범죄의 **정의 규정이 다르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신진희 변호사)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 ‘협박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고려하기보다는 **‘협박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자**는 의견(김현아 변호사)
- ☞ **‘협박·강요에 이용된 촬영물, 복제물을 자발적으로 완전 폐기한 경우’ 등의 사유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김현아 변호사)
-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가중요소로 두자는 의견(김현아 변호사)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두지 말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김현아 변호사)
-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서 **법정형 내에 있으나 양형기준안 권고 형량범위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경렬 교수)
- ☞ 인질 강요, 인질 강도 등 인질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경렬 교수)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 일반 방청인 의견 1

- 특별감경인자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의 정의 규정에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 등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미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 등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음. 따라서 이 요소는 삭제하거나 일반감경인자로 분류하여야 함
-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더라도, 그 범죄의 약한 형량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약해져서는 안 됨

■ 일반 방청인 의견(질의) 2

- 아동이 피해자인 성착취물 범죄가 미국에서처럼 엄벌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음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재판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5] 향후 일정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

-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2020. 12. 7. 제106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